##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56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9.

발 의 자:이상헌·강민정·김성주

김승원 · 김정호 · 문진석

신동근 • 안민석 • 양정숙

유정주 • 윤관석 • 이규민

이병후 · 이상직 · 전용기

홍정민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체 국보·보물 중 동산문화재는 약 70%에 달하지만, 현행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의 법령체계는 '설계, 시공, 감리'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문화재의 수리 위주로 구성되어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'보존처리'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.

따라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수행 시 보존과학 전문가 등이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보존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한 문화재를 전승해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이에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'보존처리'와 '보존처리계획' 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, 보존처리의 수행,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 을 반영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"보존처리"란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재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·화학적 조치 등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.
- 18. "보존처리계획"이란 인문학적·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화재의 손상 정도·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5조제5항 단서 중 "및 동산문화재 분야"를 "분야"로 한다.

제33조제1항 본문 중 "동산문화재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문화재"로. "문화재수리가"를 "보존처리가"로 한다.

법률 제1741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2 제1항제1호 중 "문화재"를 "문화재(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법률 제1741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4제1항 중 "제33조의2"를 "제33조의2·제37조의4"로, "설계승인"을 "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"을 "제33조의3제1항제1호·

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제33조의3제1항·제37조의5제2항"으로 한다.

제3장에 제3절의2(제37조의4 및 제37조의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3절의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

- 제37조의4(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) 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은 문화재수리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수 있다.
  -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장(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"시·도지사"를 말한다. 이하이 절에서 같다)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,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·승인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7조의5(보존처리의 수행 등) 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는 제37조의4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재수리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
- 2. 동산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3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한 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의2. "보존처리"란 문화재 원
	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
	획을 바탕으로 문화재 손상
	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・화학
	적 조치 등의 문화재수리를
	<u>말한다.</u>
2. ~ 17. (생 략)	2. ~ 17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18. "보존처리계획"이란 인문학
	적·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
	통하여 문화재의 손상 정도ㆍ
	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
	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.
제5조(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	제5조(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
한) ① ~ ④ (생 략)	한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	⑤
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	
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.	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	
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	
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,	분야
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	

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
#### ⑥ (생략)

제33조(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) 저

① 문화재수리업자(제41조의2 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 재단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 서 같다)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(동 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실제로 문 화재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해당 문화 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 하고,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 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 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 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 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 략)

법률 제1741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<u>.</u>
⑥ (현행과 같음)
제33조(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)
①
<u>प</u> ्रो
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문화재
<u></u> <u> </u>
존처리가
<u>.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7410호 문화재수리 등에
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33조의2(문화재수리의 설계승 전인)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(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"시·도지사"를 말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,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)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1.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<u>문화재</u>
- 2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
법률 제17410호 문화재수리 등에 법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제33조의4(허가 등의 의제) ① 제 저 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35조제 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<u>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</u> 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

제33조의2(문화재수리의 설계승
인) ①
1
문화재(동산문화재는
제외한다)
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7410호 문화재수리 등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제33조의4(허가 등의 의제) ① <u>제</u>
33조의2 · 제37조의4
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
계획의 승인
② <u>제33조의3제1항제1호·제37</u>
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제3

고한 경우에는 「문화재보호 법」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<u><신 설</u>>

<신 설>

3조의3제1항 · 제37조의5제2항-

제3절의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
제37조의4(보존처리계획의 수립
등) 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
획은 문화재수리업자 가운데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립하
여야 한다. 다만, 제5조제3항에
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의을 수립할 수 있다.

-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장(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"시·도지사"를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같다)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,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 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·승인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1. (생략)

<신 설>

제37조의5(보존처리의 수행 등) 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는 제37 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보 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재 수리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.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 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 1.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 한 경우 2. 동산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 형을 훼손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 재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 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제37조의4제1항을 위반하 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

	<u>을 수립한 자</u>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